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2]

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(제14조제1항 관련)

사업의 종류	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
1. 토사석 광업	상시 근로자 50명 이상
2.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	
3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	
4. 펠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
8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
10. 1차 금속 제조업	
11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
12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
13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
14. 전기장비 제조업	
15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
16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
17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
18. 가구 제조업	
19. 기타 제품 제조업	
20.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
21. 해체, 선별 및 원료 재생업	
22. 자동차 종합 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	
23. 농업	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
24. 어업	
25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26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
27. 정보서비스업	
28. 금융 및 보험업	
29. 임대업; 부동산 제외	
30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)	

31. 사업지원 서비스업	
32. 사회복지 서비스업	
33. 건설업	공사금액 20억 원 이상
34.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	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